



사례담당자가 알아야 할 장애인권리옹호 안내서



사례담당자가 알아야 할
장애인권리옹호 안내서



■ 참고문헌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 걷는 올레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례담당자가 알아야 할 장애인권리옹호 안내서

발행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행일 2020.12.

편집제작 젊은기획

11813)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전화 031-851-1007 / 팩스 031-851-1008 / 메일 ggndrc@gmail.com / 홈페이지 www.ggnaapd.or.kr



Contents

1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06 장애인 상담 시 기억해주세요
- 08 장애인 사례지원 시 지켜주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장애인권리옹호

- 12 가족의 신체적 · 정서적 학대
- 15 가족의 방임
- 18 가족의 자기결정권 침해
- 21 가족의 경제적 착취 1 (명의도용)
- 25 가족의 경제적 착취 2 (상속배제)
- 28 주변 지인의 경제적 착취 (노동력)
- 32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 34 도전행동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 36 일터에서의 성추행
- 40 비장애학생들의 괴롭힘

2

상담가가 알아야 할 용어와 정보

- 44 용어해설
- 48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 52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54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3



사례담당자가 알아야 할
장애인권리옹호 안내서

1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장애인 상담 시 기억해주세요!

장애인 상담 시 상대방 존중하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때 불쾌함을 느낍니다. 장애인 사례자와의 상담 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표현되는 미간의 찌푸림, 어떤 눈짓, 어떤 표현 등에서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상담 과정에서 라포형성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상담 시 친근감의 표현이 때로는 사례자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사자의 이해정도 확인하기

사람은 개인의 사회활동, 경험 등에 따라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릅니다. 개개인의 사회적 경험, 가정환경, 학력 등의 유무에 따라 이해의 폭이 매우 다양하기에 같은 문장, 같은 단어, 같은 상황도 대상자 별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파악하기

정신적장애인¹⁾과 상담 시 가장 어려움 부분이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실제 본인이 겪은 일인지, 본인이 직접 본 것인지, 누군가가 말해서 알게 된 일인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사례담당자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직접 본 것, 들은 것, 겪은 것 등으로 나누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주세요.

언어적 소통 외의 다른 표현법 이해하기

우리는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대화 시에도 당사자가 표현하는 다양한 소리, 몸짓, 얼굴표정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그림판, 수어, 점자 등 다양한 의사소통보조기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정신적장애인 :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인 사례지원 시 지켜주세요!

장애인 사례자(당사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주세요

장애인 사례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는 주변인(가족, 동거인, 활동지원사 등)과 이야기 나누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례자가 사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황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확인하는 것은 이후 지원과정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주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해주세요

지역사회에는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자 한 행동이었으나, 장애인 사례자를 위협하다는 이유로 과잉보호하여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하거나,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위계관계를 형성하여 장애인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인을 중심으로 사례를 바라보면, 사례자의 상황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자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별도공간에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장애인 사례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인의 개입이 있다든지 “애는 아무것도 몰라”라는 등의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주변인과 분리하여 별도공간에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장애인 중에서는 주변인에게 의존하거나 위계관계를 느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변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례자가 별도공간에서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피해사실의 확인만이 아닌 당사자의 삶을 살피주세요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 사실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피해를 떠올리는 게 힘들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관계의 파악과 함께 피해자가 살아온 삶에 공감하고 이후의 삶을 함께 고민해주세요.

절차에 대한 지원 여부 확인해주세요

장애인 사례 지원과정에서 서류발급 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절차 안내와 함께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지원은 누가 하는지, 사례담당자의 동행이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장애인이라고 법적인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례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그렇게 해도 돼요?”, “장애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도 돼요?”라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단, 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을 선임한 피후견인의 경우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지원 요청해주세요

사례지원과정에서 당사자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례담당자가 알아야 할
장애인권리옹호 안내서

2

**사례로 알아보는
장애인권리옹호**



가족의 신체적 · 정서적 학대

사례 요약

지체장애인 소원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술을 마시고 소원 씨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소원 씨의 장애를 비하하며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원 씨는 자녀들이 결혼 할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원 씨의 바람은 남편이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원 씨는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는 하지만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가 진심인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에게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그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할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과정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은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만을 원하는지, 폭행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만을 원하는지에 따라 절차를 선택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가 진심인지, 혹은 두려움이나 가족의 반대 등 다른 이유로 자신의 의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이 있지만 이혼을 원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가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쉽터로 옮긴 후 행위자가 반성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되었지만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행위자의 연락과 방문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가 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제도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2차피해 또는 보복이 두려운 경우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도 및 기관

■ 보호처분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에는 8 종류가 있으며, 각 처분을 병과 할 수 있음.

-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제한 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변보호조치

범죄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직권 또는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결정·실시해야 한다.

-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CCTV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⑤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29조(임시조치)

가족의 방임

사례 요약

뇌병변과 시각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8살 진화 군은 가족과 함께 외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 동생은 외식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지만, 진화 군은 병원갈 때를 제외하고 외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8살이 되는 동안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식사도 가족들과 따로 합니다. 온종일 누워서 혼자 지내는 진화 군. 언젠가 진화 혼자 움직이려다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진화 군의 모습을 본 병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도 몇차례 했는데, 학대 수사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장애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자녀의 장애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미실시와 적절하지 못한 의식주 제공은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지원 가능한 자원을 확인합니다.
- 장애아동 외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 살펴야 합니다.

지원 과정

장애아동 부모 중에는 장애 발생에 대한 죄책감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장애 발생의 책임이 부모에 있지 않다는 안내와 함께,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특수교육법 위반이며,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방임에도 해당 될 수 있다. 이는 처벌 대상임을 알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자녀의 정서발달에도 해가 될 수 있다 등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 아동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6세부터 만64세까지), 맞춤형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모가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여 장애자녀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와 재활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기 활용을 통해 신체적 기능 보완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면, 병원 입원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유기·방임에 해당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을 다른 자녀 및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세심한 지원방안도 필요합니다.

관련제도 및 기관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맞춤형 도우미를 파견하여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①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외 결정자,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 제외자, 수행기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②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③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 부모 남성장애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서비스제공기관) 방문접수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경기도보조기기복부센터

보조기기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정책, 교육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

사업영역 1) 보조기기 서비스 활성화 사업
 2) 보조기기 공적급여 사업
 3) 전문교육 사업 및 세미나
 4) 보조기기 관리사업
 5)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
 6)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연락처 1)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경기남부) : 031-295-7363
 2) 경기도보조기기복부센터(경기북부) : 031-852-7363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장애인복지법」 59조의9(금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가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요약

뇌병변장애가 있는 보람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현우 씨가 너무 좋습니다. 현우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말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보람 씨가 몇번 고백했는데 현우 씨가 여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해서 많이 속상해 했고, 그 사실을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현우 씨가 사귀자고 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람 씨는 현우 씨의 아이를 갖게 되어 너무 기쁜 데 부모님은 결혼은 안된다고 하시며 낙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핸드폰을 빼앗고 외출을 못하게 하는 등 폭언과 협박도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 결혼을 위한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결혼에 있어 부모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임을 명심합니다.
- 쉼터나 미혼모 시설 입소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의 출산·양육에 있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과정에서 부모의 폭언과 폭력에 대해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바라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에게도 폭력과 폭언 등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과정

결혼의 당사자인 보람 씨와 현우 씨 양측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혼에 있어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와 함께 결혼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현재 있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면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미혼모 시설 연계를 통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은 비장애인이 주로 입소하는 곳이므로 이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안전바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출산 양육에 있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이나 장애인가족멘토지원단 등의 자원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위협 등이 있다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관련 제도 및 기관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조건	1)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 2)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 3)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급여	1) 종합점수에 의한 등급별 지원 (최대 하루 24시간 지원가능) 2) 특별지원급여 : 출산. 만 6개월 / 자립준비. 만 6개월 /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인	1)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신청 가능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

- 사업영역**
-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2)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에 관한 사업
 -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 4)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 연락처** 경기북부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 031-852-1202
- ※ 전국 각 지역 시·도 및 지자체에 지역 센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경기북부는 구리, 의정부, 포천, 연천에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 되어 있음
-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가족의 경제적 착취 1 (명의도용)

사례 요약

지체장애가 있는 호영 씨는 어려서부터 시설생활을 해왔지만, 얼마전 시설을 나와 지금은 자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후부터 호영 씨 앞으로 알지 못하는 채무독촉장이 자꾸 왔습니다. 호영 씨는 대출을 받아 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연락도 받았고,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채무독촉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서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족들과 상의를 하자, 형이 호영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피해자의 전체 채무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사자에게 형에 대한 경찰 신고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권회사에 계약 시 작성한 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전화 대출의 경우 음성파일 등을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의 통장거래내역도 확인합니다.
- 채무독촉과 관련하여 불법추심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경찰서, 법원 등에서 온 서류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원 과정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대출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는 행위는 경제적 착취임을 안내합니다. 대출자에게 채무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안내하고 대출자 승계를 통하여 대출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 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는 방법과 한국 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을 통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대출회사 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래계약서(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전화대출의 경우는 음성파일, 통장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누가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채권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을 하는 과정의 불법추심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협박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야간에 전화 또는 방문,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행위자가 변제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수령하게 되면 이후 급여압류 또는 통장압류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서를 수령하고 14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압류방지를 위해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제도 및 기관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장애인 연금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2)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3)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경우 70~90% ²⁾ ,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³⁾ 범위내에서 감면 2)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⁴⁾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⁵⁾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
------	--

신청방법	1)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 온 라 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www.ccrs.or.kr)
------	---

상담전화	1600-5500
------	-----------

관련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2)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90% / (2)고령자:80% / (3)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

3) '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적용

4)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5) 이행 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Tip! 불법추심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제4호)

가족의 경제적 착취 2 (상속배제)

사례 요약

뇌병변장애가 있는 현재 씨, 형제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현재 씨는 미혼입니다. 얼마전 현재 씨와 같이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유산에 대한 상속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형제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찾아와 '너는 집이 있어도 물려줄 사람도 없고 재산이 있으면 누가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집 명의를 본인으로 하겠다' 라고 하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 씨가 '상속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고 하자, 누나는 '상속은 법대로 하고, 대신 후견인을 선임하겠다' 라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는 금융감독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에는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관련 내용은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됩니다.
-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법으로 정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의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어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과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재산상속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일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재산에 관하여 누구나 본인이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듯 장애인 역시 본인이 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경제적 착취 유형 중에는 성년후견제를 악용하여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장애인 당사자의 재산을 착취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확인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제도 및 기관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음.

방문신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관련 법령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및 제4조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금지행위)

주변 지인의 경제적 착취(노동력)

사례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진규 씨는 아버지 지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장에게 부탁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씨는 이 곳에서 설거지, 청소, 식재료 다듬기, 흡서빙 등 아침부터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장은 식사가 잘못 나가거나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거나 하면 심한 욕설과 함께 때리고,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정작, 진규 씨는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를 받아 본 적 없는데 말입니다. 사장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집도 사주고 장가도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진규 씨는 사장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버지가 계속 다니라고 하고, 사장한테는 또 맞을 거 같아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급보호조치를 위한 공간(쉼터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체적 학대로 인한 몸의 상처, 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학대행위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생활구조, 의사결정에 있어 기초적인 정보·지식의 부족, 장애로 인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사건에 있어 장애인학대행위자가 거짓으로 친척 관계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가족이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행위는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지원과정

피해자가 사장과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급보호조치를

위한 공간(쉼터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이 분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의 여러 가지 감정과 함께, 피해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취약성 등이 원인이기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간혹 피해자에게 일터에서 일을 그만두고 시설에 입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피해장애인은 지원을 거부하고 그곳에 계속 있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는 일하고 있는 그곳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내던 사람은 시설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가족에게 요청을 받았다, 오갈 곳 없는 사람을 내가 보호 한거다”라고 하거나 “행위자의 고모부 또는 이모다” 라고 하는 등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노동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맞지만 그 외 성인의 경우 본인의 노동과 관련하여 가족이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에는 동거친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경제적 착취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취약한 지위와 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착취는 범죄행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사건의 경우, 노동부 진정과 경찰 고소·고발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하게 되지만 근무기간, 근무시간등의 특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이 동반되는 경우 피해자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등의 경찰조사 또는 재판 등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어 행위자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자 처벌을 위한 경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함께 영상녹화를 요청하여 이후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에 피해자가 2, 3차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를 할 경우, 가명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참고인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형법상의 준사기 또는 배임·횡령,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혐의에 해당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법률구조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제도 및 기관

■ 체당금(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 사업 / 소액체당금지급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지급범위 및 상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 (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 등 700만원 상한)
청구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사례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은지 양은 수영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집 앞에 수영,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립 문화체육센터가 있어 문의해 봤는데,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대상 수영 프로그램은 있지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강좌개설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은지 양은 그곳에서 수영을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은지 양은 그동안 집에서 먼 곳에서 수영을 배웠지만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장애를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원 과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청(시·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는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 전화 1331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 접수 사례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차별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별로 인정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합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전화 1644-8295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실확인 후에 차별로 인정될 경우 조례에 의해 관련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합니다.

관련 제도 및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이용대상	차별을 받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	----------------------------------

접수방법	(진정서 작성 제출)
------	-------------

1)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2) 우편/방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 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3) 팩스 : 02-2125-9811~2

4) 인권e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5)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 금지)

도전행동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사례 요약

정신 장애가 있는 태일 씨는 오늘도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매일 같이 전화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방문하여 태일 씨와 주변 사람들을 만나 본 결과, 태일 씨는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아파트 반상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될 정도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일 씨의 행동에 지친 주민들은 태일 씨에게 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항의가 거세질수록 태일 씨의 행동도 더 거칠어져, 얼마전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버렸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 정신장애인과 대화 시 환청, 환시, 환각 등에 대한 판단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당사자의 감정에 먼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병원 진료 유무, 약 복용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욕구는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되, 주민들의 행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원 과정

당사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환청, 환시, 환각, 망상 등과 사실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되, 주민들이 하는 행동이 정신장애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이사하게 한다거나, 이사 오는 것을 거부할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장애당사자의 요구사항을 중재하고 조정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와 고립되어 살아가면서 더 큰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 참여나 지역 복지관 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사자가 자립을 원할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 진료를 통한 약물복용, 병원 입원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동행하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자·타해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강압적인 입원 치료 등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관련제도및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단체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	--

주요 사업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일터에서의 성추행

사례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유정 씨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어느 날 유정씨에게 일이 느리다고 혼을 내고 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유정 씨의 몸을 만졌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팀장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 여기서 일 못하게 한다”라고 말을 해서 두려웠습니다. 이후에도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라고 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거부하는 유정 씨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엄마가 이유를 물었고, 유정 씨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성폭행 피해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당사자의 인지정도와 진술가능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여 사건이 재구성되어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핸드폰에 카톡이나 문자, 사진, 음성녹음 등 관련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당사자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안내하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을 진행하되,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장애인이 행위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원 과정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인에 의해 상담이 접수되고 고소, 치유 과정 등을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쉽게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장애인당사자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주변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재구성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후 경찰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인지상황 상(기억력 등)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둘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녹화(녹음) 등을 하면서 진행하고,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바라기센터의 일정이 빠르게 잡히지 않는 경우, 경찰의 방문입회를 요청합니다.

특히 부모나 밀접한 관련자들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상담가가 신중하게 상황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장애인당사자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느끼게 되면 진술을 피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당사자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절대 주면 안됩니다.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면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을 하게 되고, 사건에 따라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이 조사과정에 참석하게 됩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통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직계친족, 가족, 배우자 등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전보배치 등을 통해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치료비,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 연계도 가능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호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연락처	1)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 031-874-3117 2)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 031-816-1374 ※ 전국 각 지역 시·도 및 지자체에 지역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북부는 경기북동부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 59개의 지역센터에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업진행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사업영역	1) 경제적지원 :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비용, 취업지원비 지원 등 2) 심리지원 : 심리상담, 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 등 3) 법률지원 : 법률전문가의 자문, 형사절차정보제공, 재판모니터링, 법정동행지원 등 4)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LH주거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 5) 통합네트워크서비스 : 입소시설 연계, 유관기관 연계 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피해자의 지위 강화, 피해자 사생활 평온 보호,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신변보호 등
------	---

연락처	1577-1295
-----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오해

왜 저항하지 않았나요?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기도 하며 가해자의 얼굴이 무서워서, 때릴 것 같아서, 가족에게 말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를 '동의'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기억을 하지 못하나요?

성폭력 피해의 충격이나 장애로 인하여 시간, 방향, 숫자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의 특성과 개인의 인지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비장애학생들의 괴롭힘

사례 요약

성빈 군은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학교를 매우 좋아하던 성빈 군이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아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성빈 군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화장실” “사진” “싫어”라고 단어들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에 아들의 옷이 젖어서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흘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망설여진다’ 라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했다면 학교와 빠른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행위자도 미성년자라는 점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학생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을 지원하는 사람의 조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과정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인 아이들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처음에 호기심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이야기보다 보호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보호자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 피해자의 이야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의사소통을 조력인의 신청도 가능하기에 피해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에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있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예방,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이곳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제도 및 기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 기구

<p>심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위원회 구성</p>	<p>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p>
<p>위원회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 자체해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사례담당자가 알아야 할
장애인권리옹호 안내서

3

상담가가 알아야 할 용어와 정보



주요 용어 해설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등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폭행·상해, 감금, 신체의 구속, 체벌·기합 등)
- 정서적 학대 :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폭언·협박, 모욕·무시·비하, 따돌림, 강요 등)
- 성적 학대 :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장애인에게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희롱, 신체 촬영, 성매매 강요 등)
- 경제적 착취 :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 재산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것 (사기·준사기, 횡령, 배임·노동력 착취, 명의도용 등)
- 유기·방임 : 유기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 방임이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것
*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 :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후견인, 활동지원사, 복지시설 종사자,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됨.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보호처분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처분으로 판사의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

- 가정보호재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분류

임시조치 임시조치란, 가정보호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임시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 2(긴급임시조치), 제 29조 (임시조치)

- 긴급임시조치 : 가족 간의 폭행 사건에 대해 재발의 위험이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경찰과 검사는 법원에 긴급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임시조치 :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조사 심리하는 중에 판사는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일련의 명령으로, 기존의 피해자보호제도와는 달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송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 피해자보호명령 :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나, 이와 같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각 조치는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을 처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편의시설 설치 대상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밖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편의시설의 종류 : 대상 시설별 상이하며, 아래의 구분과 같음
 - 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그밖의 시설 :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변제

변제란, 채무의 이행을 말함.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음.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제466조(대물변제)

상속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함.

- 유언상속 :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 개시
- 법정상속 : 민법에 따라 상속인·상속순위·상속분 등으로 상속 개시
- 법정상속지분 : 법정상속이 개시 될 때의 상속순위를 의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1,2순위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민법」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임.

- 관련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986년 「법률구조법」의 제정 · 공포에 의해 설립)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 관련 주요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https://ggnaapd.or.kr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 182	https://www.ggbpolice.go.kr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119, 031-849-2710	https://119.gg.go.kr/north
보건복지상담센터(복지콜)	129	http://www.129.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국가인권위원회	1331	https://www.humanrights.go.kr
질병관리청	1339	http://www.cdc.go.kr
고용노동부	1350	http://www.moel.go.kr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1366, 031-873-1366	http://ggbb1366.or.kr
청소년긴급전화	1388	https://www.cyber1388.kr:447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https://labor.gg.go.kr/

■ 법령 및 생활정보 · 민원

정부24		https://www.gov.kr
대한민국법원		https://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금융 관련

금융감독원	1332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http://www.fss.or.kr/s133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http://www.ccfs.or.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https://www.ccrs.or.kr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http://www.kcredit.or.kr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1577-1295	http://kcvc.kcva.or.kr
---------------	-----------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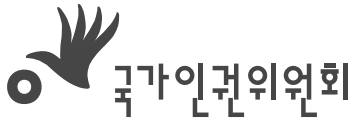
경기북부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52-1202	http://www.ggfamily.or.kr
구리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556-0660	http://www.gurifamily.or.kr
의정부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48-8980	http://www.ujbfamily.co.kr
포천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544-9195	http://pcffamily.kr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833-5533	http://ycfamily.or.kr

■ 장애인복지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031-856-5300	https://www.gb.w.or.kr
가평군장애인복지관	031-581-9785	http://www.gapyeongjb.or.kr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http://goyangrehab.or.kr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562-0068	http://guriwel.or.kr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031-592-7150	http://nyjwel.or.kr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867-0080	http://www.ddcjb06.net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8-4090	http://www.yjwel.or.kr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850-5300	https://www.warmhand.or.kr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59-7020	https://www.pajurehab.or.kr

■ 보조기기 관련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031-852-7363	http://atrac.or.kr
-------------	--------------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누가 진정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 가능.

○ 조사와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인권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등
- ▼
- ② 진정접수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 ▼
- ③ 사건조사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들의 간담회), 법률해석, 해외사례 조사
- ▼
- ④ 위원회 의결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
- ▼
- ⑤ 당사자 통보 위원회는 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 사건처리와 구제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각하, 기각결정 또는 구제조치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권상담 및 진정 처리절차

상담 및 진정 방법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휴대전화의 경우 02-1331)
 방문/우편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센터
 팩스 02-2125-9811~2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모바일 1331인권상담 앱 설치 → 화상 · 채팅 상담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에서 진정서 작성 및 접수 (365일 24시간)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경우, 면전진정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특이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민원),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등의 기능을 합쳐서 운영 실시.

○ 고충처리민원과 부패방지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전화	국번없이 110(공통) 또는 1398(부패방지신고)
우편/방문	· 본부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합동민원센터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1) 고충처리민원 : 044-200-7971 2) 부패방지신고 : 044-200-7972
온라인 신고	1) 고충처리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2) 부패방지신고 :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 : www.clean.go.kr

○ 행정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① 청구서, 신청서 제출 - 서면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후,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행정심판 위원회 제출
- 온라인청구 : www.simpan.go.kr
▼
- ②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 열람 (반박 또는 주장 보완은 보충서면 작성 제출)
▼
- ③ 심리기일안내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E-mail, 휴대전화 SM, 우편 등으로 통지
▼
- ④ 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음.)
▼
- ⑤ 재결서 송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심리기일의 다음날 부터 홈페이지, E-mail, 휴대전화 SMS등으로 안내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1~2주후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 됨.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



◎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장애인 차별 상담과 현장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장애인을 만났는데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나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1644-829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학대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할 때
 - 쉼터 등 안전한 장소로 입소 지원
 - 치료나 즉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할 때
 - 미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 피해장애인에게 긴급생계비 및 주거 지원 등이 필요할 때
 - 피해장애인에게 심리상담 · 의료 등 지원이 필요할 때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
- 장애인이 형사사범 절차 진행 시 조력 지원이 필요할 때
 - 장애인학대행위자와의 처벌을 위한 고소나 고발 절차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다양한 법률지원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번 없이 1644-8295

전화하시면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주소 (11813)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전화 031-851-1007 팩스 031-851-1008 메일 ggndrc@gmail.com 홈페이지 www.ggnaapd.or.kr